

1. 개정이유

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 「저작권법」 내용을 반영하여 시정 명령서 등 기존 서식을 개정하고, 긴급차단 명령서 등 서식을 신설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접속차단 명령 절차 관련 서식 마련(별지 제57호 서식 개정)

나. 긴급차단 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등에 필요한 서식 마련
(제26조의2제1항~제5항 신설, 별지 제57호의3, 제57호의4, 제57호의5, 제57호의6, 제57호의7 서식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: 실시 예정
3) 행정규제 : 해당사항 없음

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57호 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앞쪽)

제 호				
☐ 경고 또는 삭제 · 전송중단 ☐ 접속차단 ☐ 계정 정지 ☐ 게시판 서비스 정지				
명령서				
온라인서비스 제공자	단체명(성명)		대표자명	
	주소			
	홈페이지	http://	연락처	
명령 종류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	
명령 내용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	
명령 이행기간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	
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				
명령 사유	위반일시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
	위반행위 내용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
기타 필요절차				

⑤ 영 제72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의7
서식에 따른다.

별지 제57호의3서식, 별지 제57호의4서식, 별지 제57호의5서식, 별지
제57호의6서식 및 별지 제57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호				
긴급차단 명령서				
온라인서비스 제공자	단체명(성명)		대표자명	
명령 종류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	
명령 내용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	
명령 이행기간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	
명령 사유	위반일시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
	위반행위 내용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
기타 필요절차				
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문화체육관광부장관			직인	
※ 담당자 정보				
① 성명 :		② 소 속 :		
③ 전화번호 :		④ 전자우편주소 :		
⑤ 주 소 :				
※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저작권법」 제142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				
※ 향후 절차 안내				
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5항,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접속차단 여부 확정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(뒤쪽)

No	명령대상 정보(URL)	명령내용	명령 이행 기한	명령 사유	
				위반 일시	위반행위 내용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15					

제 호				
긴급차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				
이의신청자	성명 (단체·법인명)		단체·법인 대표자명	
	주소 (단체·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)		연락처	
	단체·법인의 홈페이지	http://		
긴급차단 조치 대상 정보	온라인상 위치정보(URL)			
	기타 정보			
이의신청자가 상기 정보의 게시자 또는 게시 책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 목록				
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 성명(단체·법인명)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				
※ 첨부서류: 하단의 자료 각 1건 이상 포함 1.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. 자신이 긴급차단 조치된 정보의 권리자로 표시된 자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.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)				

제 호				
긴급차단 조치 해제 명령서				
온라인서비스 제공자	단체명(성명)		대표자명	
명령 종류				
명령 내용				
명령 이행기간				
명령 사유				
기타 필요절차				
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7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.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				
※ 담당자 정보 ① 성명 : ② 소속 : ③ 전화번호 : ④ 전자우편주소 : ⑤ 주소 : ※ 향후 절차 안내 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5항,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접속차단 여부 확정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m²(재활용품))

제 호				
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서				
이의신청자	성명 (단체·법인명)		대표자명	
	주소 (단체·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)		연락처	
	단체·법인의 홈페이지	http://		
긴급차단 조치 해제 대상 정보	온라인상 위치정보(URL)			
	기타 정보			
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7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				
※ 향후 절차 안내 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5항,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접속차단 여부 확정				

제 호				
☐ 접속차단		확 정 명 령 서		
☐ 접속차단 해제				
온라인서비스 제공자	단체명(성명)		대표자명	
명령 종류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	
명령 내용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	
명령 이행기간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	
명령 사유	※ 대량일 경우 뒤쪽 사용			
기타 필요절차				
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.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				
※ 담당자 정보 ① 성 명 : ② 소 속 : ③ 전화번호 : ④ 전자우편주소 : ⑤ 주 소 : ※ 명령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저작권법」 제142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m²(재활용품))

(뒤쪽)

No	명령대상 정보(URL)	명령내용	명령 이행 기한	명령 사유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11				
12				
13				
14				
15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6조의2(긴급차단 명령서 등) ①</u> <u>영 제72조의7제1항에 따른 긴급</u> <u>차단 명령서는 별지 제57호의3</u> <u>서식에 따른다.</u> <u>② 영 제72조의7제2항에 따른</u> <u>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7호의4</u> <u>서식에 따른다.</u> <u>③ 영 제72조의7 제4항에 따른</u> <u>긴급차단 조치 해제 명령서는</u> <u>별지 제57호의5서식에 따른다.</u> <u>④ 영 제72조의7 제5항에 따른</u> <u>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서는</u> <u>별지 제57호의6서식에 따른다.</u> <u>⑤ 영 제72조의7제6항 및 제7항</u> <u>에 따른 명령서는 별지 제57호</u> <u>의7서식에 따른다.</u>